

심사보고서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669
----------	-----

2021. 3. 23.(화)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이상욱의원 등 14인

나. 제출일자 : 2021년 3월 9일

다. 회부일자 : 2021년 3월 10일

라. 상정일자 : 2021년 3월 11일

- 제3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이상욱 위원)

가. 제안이유

- 집행기관마다 다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 서식을 통일하여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서식 근거 신설(안 제19조제3항)
- 별표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총괄표 및 위원회별 목차 신설(안 별표 3)
- 별표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서식 신설(안 별표 4)

3. 검토보고 요지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권영주)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 「지방자치법 제41조의2(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에 대한 처리)」,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감사 또는 조사 보고에 대한 처리)」 규정에 의거
감사 또는 조사 결과, 도(道)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가 그 시정을 요구하며
그 시정 요구를 받은 도(道)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 행정사무 감사 시정사항(지적사항)에 대한 일목요연한 처리 결과 총괄표 서식, 구체적인 처리 결과 보고 서식 등이 없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조문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고 받기 위해 동 조례안 제19조 제3항 중 ‘의회’를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라 작성하여 의회’로 명시함.

-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 서식을 통일하기 위해 별표 3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총괄표 및 처리결과 위원회별 목차 보고 서식과 별표 4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서식을 신설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라. 검토의견

-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그 처리 결과 보고 서식을 신설하고 구체화하는 등 행정사무감사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충청북도의회 조례 제 호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의회”를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라 작성하여 의회”로 한다.

별표 3(신설)은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신설)는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총괄표

구분	합계	처리결과				비고
		완료	추진중	검토중	조치불가	
계	0	0	0	0	0	
소계						
○ ○○○○국						
○ ○○○○국						
○ .						
○ .						
○ .						
위 .						
원 .						
회 .						
. .						

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위원회별 목차

○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연번	소관 실국	관리번호	발 언 제 목	처리결과	발언의원	쪽수
계		9건				
1	○○○○국 (00건)	000-00-00		완료	○○○	
2	○○○○국 (00건)	000-00-00		추진중	○○○	
3	

<처리결과 분류기준>

- 완 료 : 임시 또는 긴급조치를 포함하여 중·단기적으로 조치가 완료된 사항
- 추 진 중 : 중앙부처 등에 건의 또는 시책에 반영하여 현재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사항
- 검 토 중 : 법령상의 규제 또는 예산 미확보, 민원 발생, 중앙부처 등과 협의 지연 등으로 착수하지 못한 사항
- 조치불가 : 검토 결과 필요성이 없거나 시행이 전혀 불가능한 사항

[별표 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발언의원	소 속	○○○위원회	발언일자	0000. 00. 00.
	성 명	○○○ 의원	관리번호	000-00-00
발언제목				
소관부서 (담당자 / 행정전화번호)	○○○○국 ○○과 (/)		구 분	건의(), 시정(), 처리요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추진상황	<input type="checkbox"/> 현황 ○ <input type="checkbox"/> 문제점 ○ <input type="checkbox"/> 조치계획 및 대책사항(수정일시, 세부사항, 대책방향) ○ <input type="checkbox"/> 결과 ○ <input type="checkbox"/> 비고 ○			
진 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조치불가()			
조치불가사유				
진도예상시기	단기(즉시 조치)	중기(6개월 이내)	장기(6개월 이상)	기 타
최종결과 보 고 일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9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 · ② (생략)</p> <p>③ 도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u>의회</u>에 보고하여야 한다.</p>	<p>제19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u>별표 3 및 별표 4에 따라</u> <u>작성하여 의회</u>-----.</p>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4.>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도의회는 그 감사 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4.>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27조를 따른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2(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에 대한 처리) ①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② 지방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으로 이송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7. 14.]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① 법 제4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한다.

② 지방의회는 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한 조사의 발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조사 여부에 관하여 의결을 한다. 지방의회가 폐회 중 또는 휴회 중인 경우 조사의 발의가 있으면 지방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감사나 조사는 제41조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에 의하여 한다.

④ 지방의회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 사무보조가 필요하면 지방의회사무 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2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